

의안번호	2215940
의 퇴 인	박지혜의원
회 답 일	2026. 1. 26.
추계번호	26B0105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	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 (제2항) 8. 제69조의2에 따른 녹색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	의무규정
2	안 제69조의2(녹색채권의 발행) 신설	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의 녹색채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함(제2항)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녹색채권은 그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발행 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야 함(제3항)	
		녹색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채법」을 적용함(제4항)	
		녹색채권의 종류·이율, 발행의 방법과 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9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	·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
2	안 제69조의2(녹색채권의 발행)	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¹⁾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가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기후대응기금의 재원

1) 이 개정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93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 등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(기후대응기금) 2020년 12월에 발표한 「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」에서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‘기후대응기금’ 신규 조성 추진을 발표하였고, 이후 2021년 8월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근거인 「탄소중립기본법」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설치·운영 중임²⁾
 -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기후대응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녹색채권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

[표 1]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 현황

(단위: 백만원, %)

수입항목		2024 결산	2025 본예산 (A)	2026 예산 (B)	비중	B-A	(B-A)/A
자체 수입	배출권 매각대금	187,677	348,700	765,123	26.3	416,423	119.4
	각종 정산금, 환급금	77,046	14,327	66,846	2.3	52,519	366.6
전입금	일반회계전입금 (교통·에너지·환경세 7%) (추가전입금)	1,097,001 (797,236) (299,765)	1,331,187 (1,057,336) (273,851)	1,148,851 (1,148,851) (-)	(39.5) 39.5 (-)	△182,336 (91,515) (△273,851)	△13.7 (8.7) 순감
	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금	300,000	300,000	300,000	10.3	-	-
	전력산업기반기금전입금	200,000	200,000	200,000	6.9	-	-
	복권기금 전입금	108,333	107,593	106,893	3.7	△700	△0.7
	예수금	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	319,910	319,910	100,000	3.4	△219,910
보전 수입	여유자금 회수	15,863	-	217,972	7.5	217,972	순증
총계		2,305,830	2,621,717	2,905,685	100.0	283,968	10.8

주: 당초 계획 기준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2) 법 제69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

-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1. 정부의 출연금
 2.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
 3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 4.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 5.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·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
 6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(豫受金)
 7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
 8.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
 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·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- 다만,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부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 및 녹색채권의 종류·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개정안은 녹색채권의 종류·이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현시점에서 향후 정부의 녹색채권 발행 계획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